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2014. 9. 2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1. 경 과

의안 제15호로 2014년 9월 15일 김길자의원 외 7명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과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 및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

나. 법령 개정에 따른 환경 관련 법규 명시(안 제1조)

다. “보상”을 “포상”으로 조문 정비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임.

○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로 변경하고, 조문 중 “보상”을 “포상”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환경 관련 법규를 명시하고, 환경오염행위신고서(별표 2안)를 신설함.

○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포상하기 위하여 2003년에 제정되어 운영 중인 조례가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고시 제2013-138호)을 근거로 하여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 및 관련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며,

그 밖에 조문은 구민이 알기 쉽도록 법제처에서 정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관 련 법 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포상금)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법위반행위"라 한다)가 발각되기 전에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 다만, 시멘트·석탄·토사(土砂)·사료·곡물 및 고철의 분체(粉體) 상태 물질을 운송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행위

②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 환경부장관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사건의 개요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에 따라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그 신고내용이 법 또는 환경 관계 법률을 위반한 행위(이하 "환경법위반행위"라 한다)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금액·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 미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 고시)

제11조(기관별 역할 및 임무) 환경오염행위의 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기관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담당한다.

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관련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포상금 예산의 확보 운용

다. 포상금 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라. 포상금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 운영

마.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 접수·처리

바. 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포상금 지급

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홍보